

가축위생시책

이 갑 일*

국가경제가 '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옴에 따라 국내 축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축산물 수입 자유화 추세와 축산물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곧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 등 축산업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실여건과 관련하여 당부에서는 국내 축산기반을 보호·육성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가축위생시책을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 강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축산물의 소비량이 <표 1>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축산물의 소비형태는 양(量)위주의 소비패턴에서 탈피하여 고품질의 위생적인 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물질검사 및 규제 등 감시태세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철저한 검사 등 위생관리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이에 따라 당부에서는 '92.10.2일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물작업장의 시설기준을 보강하고 축산물검사기준 등을 보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축산물내 잔류물질검사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도축 및 원유검사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축산물작업장 시설개선 촉진을 유도하고 대 양축농가 계도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1)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물질검사 강화

○ 국내산 축산물내 잔류물질 검사사업 지속추진
- 소·돼지·닭고기에 대한 항생제 등 항균성 물질검사 실시(45천건, 45백만원)

○ 신속·정확한 잔류물질검사체계 구축 지원
-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CG등 정밀검사 장비 지원(15대, 525백만원)

○ 축산물검사요원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훈련 강화

2) 축산물작업장 시설개선 촉진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조성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자금 확대지원 및 행정지도 강화로 개정된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작업장시설 및 설비의 조속확보 유도
- 축산물작업장(도계장 등) 현대화 자금지원 확대(10개소, 10,300백만원)

-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시설점검 등 위생관리 강화

3) 도축검사 개선등 육류위생관리 강화

○ 도축검사 요령 개선·확립
- (종전) 관능검사, 육안검사 위주→(개선) 지

<표 1>. 축산물 소비동향

(단위 : 천톤)

		'70	'80	'90	'91	'92(E)
1인당 GNP		248\$	1,592	5,569	6,498	6,685
축산물	육류	165천톤 (5.2kg)	433 (11.3)	854 (19.9)	941 (21.7)	1,041 (23.8)
	우유	50천톤 (1.6kg)	412 (10.8)	1,879 (42.8)	1,869 (43.3)	1,919 (44.0)

* 주) -()내는 1인당 소비량임. -육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 합계임.

육 및 내장절개 검사, 시험실 검사

- 물먹인 쇠고기 등 부정축산물 유통근절
- 물먹인 쇠고기 신속검사장비(수분단백비 검사장비)를 이용한 현장검사 실시
- : NIR system 7대, 560백만원 지원('92, '93 각각 7개 시·도)

4) 원유 위생관리 강화

- 집유장의 원유검사 실시상황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개정(원유검사법 전환 및 검사기준 강화 등)에 따른 검사실시 철저유도

○ 원유위생등급에 따른 유대차등가격제도의 원활한 시행여건 조성방안 강구·추진

- 세균수 등 원유위생등급 검토고시, 원유검사 표준화요령 설정 등

- 원유검사의 공정성 확보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집유조합에 자동검사장비 구입지원(5개소, 750백만원)

5) 축산물내 유해진류물질 방지대책 및 원유 위생관리요령 계도 등 양축농가 홍보강화방안 강구·추진

2. 축산공해 방지대책

축산업과 관련된 당부사항 중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는 국내외적인 불리한 여건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축산농가가 가장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금년에도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특히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 활용으로

폐수처리경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93 주요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법 규제이하 농가 간이정화시설(간이저장조, 텁밥발효돈사, 건조장 등) 자금보조(30%) 및 융자(70%)

⇒ 개소당 300만원/3,800개소, 농발기금(114억 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신고대상농가(저장액비화, 텁밥발효돈사, 건조장 등) 자금융자

⇒ 개소당 1,000만원/3,560개소, 농발기금 및 축산진흥기금(356억원)

○ 지역축협 등 축산단체에 분뇨운반장비, 텁밥제조시설 및 분뇨공동저장탱크 시설 자금보조 및 융자

⇒ 총 17개소, 농발기금(685백만원)

○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축분발효시설) 자금보조(50%) 및 융자(20%)

⇒ 개소당 7억원/2개소, 농발기금(14억원)

○ 신고대상이상 농가에 퇴비처리장비 및 비료화 시설자금 융자

⇒ 총 250개 농가, 농어촌발전기금(45억원)

○ 축산폐수처리 연구용역 4년차 사업(자원화 활용방안) 실시

⇒ 축협, 국립종축원,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농경연 등/축진기금(140백만원)

○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위한 관계제도 개선

⇒ 가축분뇨 자가처리규정 신설, 비료관리법령 규제완화 등

3. 가축방역

가축전염병의 발생·전파·만연방지로 양축농

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 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가축의 위생적인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한다.

이를 위하여 만성·경제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절정책을 추진하고 혈청검사 사업을 확대하여 질병감염 여부 및 질병발생 동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속히 방역토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주력하겠으며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전국 49개소에서 3개소를 증설하고 기술인력 양성과 정밀검사장비 확보 및 해외 선진국의 가축위생분야 견학을 확대 실시하며 또한 공개업 수의사 및 가축방역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축질병예찰업무를 강화함으로써 가축질병의 조기검색과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한다.

○ 만성 경제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및 도태로 근절정책 추진

-우결핵(젖소 256천두, 한우 3천두)

-부르세라병(젖소 120천건, 한우, 돼지 7천두)

-돼지 오제스키병(190천두)

-제주도 부루세라병 근절사업(제주도 소 70천두)

○ 영세양축가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소 : 1,280천두(탄저 외 4종)

-돼지 : 2,100천두(돼지콜레라, 일본뇌염)

- 개 : 600천두

○ 가축혈청검사사업 실시로 질병 조기검색 및 질병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양축가의 자율방역 지원(11개 질병)

○ 젖소의 유방염 감염실태조사 및 치료로 낙농산업 보호

○ 가축위생시험소 기능활성화

-년차별 시험소 증설('93년 3개소)

-기술인력 양성 및 검사장비 보강

○ 기생충 구제

-소간질 감염실태 조사(100천두)

-소간질 구제(60천두) 및 소진드기 구제(3,000천두)

○ 가축방역 홍보 강화

-소, 돼지, 닭의 주요전염병 방역요령 홍보교육

-가축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양축가 인식 제고

4. 동물검역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수입국 다변화로 인해 외래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유입기회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수입축산물과 축산가공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위생상의 안전성 확보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수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과 위생검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등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보건과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부에서는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검역시설 및 전염병 정밀검사 장비와 수출입 육류증 잔류물질검사에 필요한 동 검사장비의 현대화에 주력하는 한편, 검역 조직, 전문인력 보강 및 기술훈련, 전산 정보망 확보를 통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수입개방화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 조직 및 인원보강

○ 동물검역시설 및 장비보강

-동물검역시설 증개축(소요예산 : 740백만원)

-잔류물질검사 등 정밀검사장비 현대화(소요예산 : 640백만원)

○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연구센타 설치

○ 검역제도 개선

-동물검역 관련규정 정비

-수입 위생조건 강화

-검역시행장 관리감독 강화

○ 동물검역 정보전산망 확장설치

○ 검역 기술훈련 강화(29백만원)

5. 수의업무 활성화

가축질병의 진료기능 강화, 수의 전문기술교육의 확대 및 수의약사감시 강화로 수의사의 자질향상, 동물진료서비스의 고급화 및 동물용의약품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등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진료시책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통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으로서는 진료 서비스개선 및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토록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공수의 운용에 있어 각·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수의 업무평정제를 도입·시행하여 공수의 활용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며, 수의약사감시를 강화하여 불량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물병원의 진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양축농가에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대한수의사회 주관으로 수의사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의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수의사법 개정

○현행법은 개정된지 20년이상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보완

○경미한 위반행위 등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신기술의 보급을 위한 연수교육제도 도입과 수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2) 공수의 동원

○가축밀집사육지역으로 개업수의사와 경합되지 않는 지역에 우선배치

○사육가축두수를 감안, 수의사가 없는 지역에 중점배치

○업무에 충실하고 진료업무수행 등에 능동적인 자를 우선배치(노약자 제외)

※ 공수의 업무상황 평정을 실시하여 매년 위촉 및 해촉시 근거로 활용.

3) 수의약사감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 및 수출입업소(농림수산부 주관)

-시설 및 품질관리상황 점검 및 수거·검정의뢰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시·도 주관)

-판매시설의 적합여부 및 약사 또는 관리약사의 관리상태

-유통 동물용의약품의 수거·검정의뢰

-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4) 동물병원 업무감독(시·도 주관)

○수의사면허증 및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제시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각종 서식 및 대장의
적정기재 및 보관여부 등

○허위 진단서·검안서 등 발급여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진료보수
의 적정징수 등

5) 수의사 및 자체검사원 교육(대한수의사회 주관)

○수의사 보수교육(3일 × 2기 60명)

-가축위생정책, 해외 악성전염병 발생상황 등

○수의사 임상강습회(1회, 400명)

-가축위생정책 및 임상교육

○축산물 자체검사원교육(3일 × 2기, 40명)

-원유·도계 등 축산물 검사방법

○수의기술지 발간·보급(12회 × 5,000부/년)

-새로운 수의학술, 최신기술정보, 임상실습
경험 등 게재

6. 동물약품 품질관리 강화

우리나라의 동물약품 제조업은 '62년 유한양행에 동물약품부의 발족을 시작으로 '63년 약사법이 제정·공포되었고, '65년 동물약품등 취급 규칙의 공포와 함께 체제를 갖추고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현재 64개 업체에서 2,436개 품목을 생산하고 년간 약 1,600억원(완제품)의 매출을 올리는 팔목할 성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동물약품제조업은 '84년말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84년말 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92. 6월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및 수입업체가 모여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동물약품업계는 축산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외국의 다국적기업에서 국내시장 개척에 혈안이 되어 있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또한 매약에 의한 자가치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에 의한 약화사고와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국민보건 위생 위해문제 등으로 동물약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1.12.31일자로 약사법을 개정하여 동물약품에 대한 관련조항을 약사

법 부칙에서 본칙으로 조정하였고, 축산물내 잔류하여 인체에 위해를 가져올 동물약품에 대한 사용자 규제조항 신설 및 동물약품 등의 범위에 동물용 의약부외품을 추가하여 동물약품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93년도에는 수의사도 동물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보사부와 협의하여 약사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또한 동물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대통령령 '92.8.17),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수산부령, '92.10.13), 동물용의약품의 제조·검사 및 품질관리기준(농림수산부고시, 92.10.24) 등을 개정·보완한 바 있다.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시설보강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효재평가 결과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변질·유효기간 경과품 등 불량·부정동물용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약사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시설보강 및 품질관리 강화

- 품질관리 우수업체(GMP)로 전환시 시설자금 지원

('91: 2개소-20억 원, '92: 4개소-20억 원), '93: 4개소-20억 원,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변질·유효기간 경과품 등 불량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약사감시 강화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및 약효재평가로 불량동물약품 품목정비

- 약효재평가 결과에 따라 '94. 9. 30까지 제조품목허가 일제정비

○약사법 개정

- '93년 정기국회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도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

이상 가축방역,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축산환경개선 등 양축농가보호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가축위생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우리 수의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WORLD VETERINARY CONGRESS

3-9 September, 1995
Yokohama, Japan



XXV Congress of the World Veterinary Association (WVA)
and
XX Congress of the World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WSAVA)